

1 귀국하지 못한 분의 체류신청

- ① 「단기체류」로 일본에 있는 분
 - * 「단기체류 (90일)」로 체류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 - ② 「기능실습」 또는 「특정활동 (외국인 건설근로자(32호), 외국인조선근로자(35호))」로 일본에 머물고 있는 분이 전과 같은 일을 희망하는 경우
 - * 「특정활동 (6개월·취업가)」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.
 - (주 1) 「특정활동 (인턴십(9호), 제조업외국인종업원(42호))」으로 일본에 체류중인 분이 전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변경 가능
 - (주 2) 아래의 ④에 의해 「단기체류」나 「특정활동 (6개월·취업가)」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분도 대상이 된다.
 - (주 3) 「특정활동 (섬머 잡(12호))」으로 일본에 체류중인 분으로, 전과 같은 직장이나 일을 희망하는 경우 「특정활동 (3개월·취업가)」으로 비자 변경 가능
 - ③ 「유학」 비자로 일본에 체류중인 분으로 일을 원하는 경우
 - * 「특정활동 (6개월·週28시간 아르바이트 가능)」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.
 - (주 1) 2020년 1월 1일 이후 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만
 - (주 2) 아래 ④에 의해 「단기체류」나 「특정활동 (6개월·취업불가)」으로 변경했던 사람도 대상
 - ④ 기타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있는 분 (위의 ②, ③에 해당되더라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 포함)
 - * 「특정활동 (6개월·취업불가)」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.
- ※ 이상 ①~④에 해당하는 분이 계속 귀국하지 못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.

2 체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

- ① 체류자격인정증명서 유효기간에 관한 대책
 - * 대개 「3개월간」의 체류자격이 인정되었으나, 코로나19 동안에는 「6개월간」 인정된다.
 - ② 신청 중인 것 중 활동개시시기의 변경희망이 표시된 경우
 - * 직장에서 작성한 이유서만을 가지고 심사한다.
 - ③ 재입국출국중에 체류기간이 경과한 분 등 다시 체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이 행해진 경우
 - * 신청서 및 직장에서 작성한 이유서만을 가지고 심사한다.
- ※ 이상 ①~③에 대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정에 차질이 빚어진 분을 포괄적 대상으로 삼는다.

3 체류신청중 재입국허가를 받아 일본에서 출국중인 분

재입국허가 (또는 가재입국허가 포함) 로 출국중인 분이 출국전에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,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, 영주권허가신청을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재입국하지 못한 경우, 일본내에 있는 친척이나 직장내 동료가 해당신청 허가에 관련한 체류카드 대리 수령을 할 수 있으며, 출국중인 분이 재입국할 때 이를 이용해 상륙신청을 할 수 있다.